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 2023년도 제 7 차 (임시)이사회

1. 회의 통지일 : 2023. 12. 4. 월요일
2. 회의 일시 : 2023. 12. 12. 화요일 10:00
3. 회의 장소 : 복음자리 사무국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2층)
4. 재적 이사 : 8명
5. 참석 이사 : 이사 정원 8명 중 8명 참석

대표이사 신명자, 이사 신명호·조진배·이정근·정원오·이순남·최정은,최종덕 감사 황경상·황규남 참석

6. 의결 정족수 : 참석 이사의 과반수, 정관 변경은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

### 7. 안 건

- 의안 제1호 : 법인 이사 연임 심의 건
- 의안 제2호 : 법인 감사 연임 심의 건
- 의안 제3호 : 법인 이사장 선출의 건
- 의안 제4호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기관장 임용 승인의 건
- 의안 제5호 : 법인 정관 변경 심의 건
- 의안 제6호 : 법인 산하기관 운영규정 변경 심의 건
- 의안 제7호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반납 심의 건
- 의안 제8호 : 법인 및 산하기관 7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의안 제9호 : 법인 및 산하기관 7개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 8. 회의 내용

####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 신명자)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대표이사 포함 이사 8인, 감사 2인 참석 확인)  
전차회의록 낭독을 요청하다. (이사 최정은의 전차회의록 낭독)  
전차회의록 내용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다. (모든 이사 : 이의 없음을 확인)

#### ◎ 안건처리

의안 제1호 : 법인 이사 연임 승인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1호인 법인 이사 연임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최정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이사 최정은)

신명자 이사의 임기가 12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조진배 이사의 임기가 12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의장 신명자)

최정은 이사의 설명을 듣고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신명호, 이정근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중 당사자인 신명자 이사를 제외한 7명 전원 찬성)

(참석이사 중 당사자인 조진배 이사를 제외한 7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의안 제1호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구분	직위	주민등록번호	임	면	임기	비고
1	이사	531205-	신명자	좌동	2023.12.16. ~ 2026.12.15	연임
2	이사	650614-	조진배	좌동	2023.12.16. ~ 2026.12.15	연임



### 의안 제2호 : 법인 감사 연임 승인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2호인 법인 감사 연임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최정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이사 최정은)

황규남 감사의 임기가 12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의장 신명자)

황규남 감사의 연임에 대하여 최정은 이사의 설명을 듣고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최종덕, 조진배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8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의안 제2호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직위	주민등록번호	임	면	임기	비고
감사	600601-	황규남	좌동	2023.12.24. ~ 2025.12.23	연임

### 의안 제3호 : 법인 이사장 선출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3호인 법인 이사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최정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이사 최정은)

현 이사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정근 이사가 신명자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신명호 이사의 동의와 정원오 이사의 재청으로 신명자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다.

(참석이사 8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신명자 이사가 이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수락하다.

(의장 신명자)

의안 제1호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기	소속 / 직책
이사장	신명자	531205- <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          </span>	2023.12.16. ~ 2026.12.15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 대표이사

### 의안 제4호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기관장 임용 승인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4호인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기관장 임용 승인 건을 상정하고, 이순남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이사 이순남)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최정은 관장이 2023년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하게 되어, 동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김민정 부장을 2024년 1월 1일을 근무 시작일로 하여 기관장에 임용하고자 합니다.(이력서 외 서류 별첨)

최정은 이사의 동의와 정원오 이사의 재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8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김민정 부장을 2024년 1월 1일을 근무 시작일로 하여 동 기관 기관장으로 임용 승인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 의안 제5호 : 법인 정관 변경 심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5호인 법인 정관 변경 심의 건을 상정하고 최정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한다.

(이사 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등을 준용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원안

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현행	개정	변경사유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복음 자리"(이하"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복음 자리"(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용어 변경
제5조(자산구분) ③ 기본재산은 별표1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된 다음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단법인 천주교 인천교구 유지재단이 증여한 재산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인사가 기부하는 재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결의하는 재산	제5조(자산구분) ③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1. 재단법인 천주교 인천교구 유지재단이 증여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재산 목록 정리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권리 포기·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령에 따라 '용도 변경' 내용 추가  ○ 법령에 따라 '재산 취득' 내용 추가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서 작성 기한 삭제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차익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차익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특정목적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8조를 따라야 한다.	○ 법령에 따라 '특정목적사업 기금 적립 규정' 내용 추가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용어 변경

<p>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지사의 해임 명령을 받은 때에는 <u>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u></p> <p>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p>	<p>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지사의 해임 명령을 받은 때에는 <u>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p>	<p>○ 법령에 따라 '해임 절차' 변경</p> <p>○ 용어 변경</p>
<p>제21조(임원의 직무)</p> <p>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p>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p>	<p>제21조(임원의 직무)</p> <p>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p>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p> <p>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p>	<p>○ 법령에 따라 '회의록 기명 날인' 내용 추가</p>
<p>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u>에 관한 사항</u></li> <li>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li> <li>4. 임원 <u>선출</u>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li> <li>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법인이 <u>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u>에 관한 사항</li> <li>8. 법인이 <u>설치한 시설의 운영</u>에 관한 사항</li> <li>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li> <li>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ol>	<p>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u>에 관한 사항</u></li> <li>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li> <li>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li> <li>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법인이 <u>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장의 임면</u>에 관한 사항</li> <li>8. 법인이 <u>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u>에 관한 사항</li> <li>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li> <li>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ol>	<p>○ 용어 변경 및 추가</p>
<p>제27조(이사회 소집 등)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7조(이사회 소집 등)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u>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u>하여야 한다.</p>	<p>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u>참석임원 전원이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필 서명</u>을 하여야 한다.</p>	<p>○ 용어 변경 및 추가</p>
<p>제31조(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31조(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매 및 소매업</li> </ol>	<p>○ 법령에 따라 '수익사업의 종류' 내용 추가</p>

제3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용어 변경

제38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실는다.

제38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공고 방법 변경

부칙 ③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항할 인장은 표1 내지 3과 같다.

부칙 ③ (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조항 정리

④ (법인의 사용인장) 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제5조3항 관련)

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출연자 (출연일)	비고				
					수익 사업	고유 목적			
산 예 부	토지	신전동 882-2	117.0㎡	339,768,000원	김수환 (1993.3.20)	복 지 관 용			
	토지	신전동 882-3	567.1㎡	1,646,858,400원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1995.11.28)				
	토지	신전동 882-3	301.5㎡	1,878,556,000원	복음자리 (2005.4.11)				
	건물	신전동 882-2 882-3 882-4	2,784,91㎡	2,230,712,910원	복음자리 (2006.9.21)	고 유 목 적			
	토지	월곡동 994-1 994-8	공유지 지분 895.99㎡ 108.317	262,127,140원	복음자리 (2018.1.30)				
	건물	월곡동 994-1 주영프라자 5층 501호	236.62㎡	212,160,146원					
		월곡동 994-1 주영프라자 5층 502호	132.40㎡						
		월곡동 994-1 주영프라자 5층 503호	144.75㎡						
	총계						5,567,182,596원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제5조3항 관련)

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출연자 (출연일)	비고				
					수익 사업	고유 목적			
부 속 산	토지	신전동 882-2	117.0㎡	339,768,000원	김수환 (1993.3.20)	고 유 목 적			
	토지	신전동 882-3	567.1㎡	1,646,858,400원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1995.11.28)				
	토지	신전동 882-3	301.5㎡	1,878,556,000원	복음자리 (2005.4.11)				
	건물	신전동 882-2 882-3 882-4	2,784,91㎡	2,230,712,910원	복음자리 (2006.9.21)	고 유 목 적			
	토지	월곡동 994-1 994-8	공유지 지분 895.99㎡ 108.317	262,127,140원	복음자리 (2018.1.30)				
	건물	월곡동 994-1 주영프라자 5층 501호	236.62㎡	212,160,146원					
		월곡동 994-1 주영프라자 5층 502호	132.40㎡						
		월곡동 994-1 주영프라자 5층 503호	144.75㎡						
	총계						5,567,182,596원		

○ 용어 일치를 위한 변경 (고유목적)





[별표 2] 설립당시의 임원(부칙 제 3조 관련)

직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대표 이사	1995.12 ~ 1998.11	재정규	440301-1*****	경기도 사릉시 신전동 33번지	
이사	1995.12 ~ 1998.11	김영준	500923-1*****	서울시 용복구 무악동 46-375	
이사	1995.12 ~ 1998.11	김연명	610809-1*****	경기도 원주시 태장동 891번지 영진2차아파트 나동 1404호	
이사	1995.12 ~ 1998.11	최수자	430222-2*****	경기도 사릉시 포동 13-3 태산아파트 103동 207호	
이사	1995.12 ~ 1998.11	정일우	351121-1*****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06번지	
이사	1995.12 ~ 1998.11	양요한	471118-1*****	경기도 사릉시 신전동 314-19번지	
이사	1995.12 ~ 1998.11	박재천	550624-1*****	서울시 성동구 평당동 317번지 1124호	
이사	1995.12 ~ 1998.11	박윤식	520712-1*****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4-3번지 삼익아파트 208동 1002호	
감사	1995.12 ~ 1997.11	이흥식	600928-1*****	인천시 남구 학익동 48-2번지 신동아파트 24동 302호	
감사	1995.12 ~ 1997.11	최원식	630308-1*****	인천시 부평구 산목3동 37-4번지 현대아파트 307동 1106호	

[별표 2] 설립당시의 임원(부칙 제 3조 관련)

직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이사장	1995.12 ~ 1998.11	재정규	440301-1*****	경기도 사릉시 신전동 33번지	
이사	1995.12 ~ 1998.11	김영준	500923-1*****	서울시 용복구 무악동 46-375	
이사	1995.12 ~ 1998.11	김연명	610809-1*****	경기도 원주시 태장동 891번지 영진2차아파트 나동 1404호	
이사	1995.12 ~ 1998.11	최수자	430222-2*****	경기도 사릉시 포동 13-3 태산아파트 103동 207호	
이사	1995.12 ~ 1998.11	정일우	351121-1*****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06번지	
이사	1995.12 ~ 1998.11	양요한	471118-1*****	경기도 사릉시 신전동 314-19번지	
이사	1995.12 ~ 1998.11	박재천	550624-1*****	서울시 성동구 평당동 317번지 1124호	
이사	1995.12 ~ 1998.11	박윤식	520712-1*****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4-3번지 삼익아파트 208동 1002호	
감사	1995.12 ~ 1997.11	이흥식	600928-1*****	인천시 남구 학익동 48-2번지 신동아파트 24동 302호	
감사	1995.12 ~ 1997.11	최원식	630308-1*****	인천시 부평구 산목3동 37-4번지 현대아파트 307동 1106호	

○ 용어 일치를 위한 변경 (이사장)

<p>[별표 3]</p> <p>법인이 사용할 인장(부칙 제 3조 관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1) 직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2) 대표이사의 인</p>  </div> </div>	<p>[별표 3]</p> <p>법인이 사용할 인장(부칙 제 3조 관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1) 직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2) 이사장의 인</p>  </div> </div>	
---	--	--

(의장 신명자)

법인 정관 변경에 대하여 최정은 이사의 설명을 듣고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이순남 이사의 동의와 최종덕 이사의 재청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8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8명의 이사가 찬성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함을 확인하다.  
의안 제5호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 의안 제6호 : 법인 산하기관 운영규정 변경 심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6호인 법인 산하기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제출한 운영규정 변경 심의 건을 상정하고, 최정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이사 최정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운영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을 설명하다.

(의장 신명자)

이사들의 의견을 물은 뒤, 정원오 이사의 동의와 이순남 이사의 재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8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의안 제6호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 의안 제7호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반납 심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7호인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반납 심의 건을 상정하고, 최정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이사 최정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부터 언어 및 인지 치료를 진행하며 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보편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시설 센터의 설립 및 정책의 변화로 인해 복지관의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운영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영역으로 시작하여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는 판단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반납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의장 신명자)

이사들의 의견을 물은 뒤, 이정근 이사의 동의와 신명호 이사의 재청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8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의안 제7호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 의안 제8호 : 법인 및 산하기관 7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8호인 법인 및 산하기관 7개 시설에서 제출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최정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이사 최정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및 산하기관 7개 시설에서 제출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단위 : 천원)

구분	기 관	차수	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사 유
1	복음자리 사무국	2차	502,800	493,400	△9,400	- 후원금 등 감액
2	복음자리 수익사업부	1차	183,200	208,200	25,000	- 사업수입 증액
3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3차	1,627,529	1,674,328	46,799	- 지정후원금 등 증액
4	여개동무지역아동센터	3차	237,052	237,052	0	- 관/항/목 오류 수정
5	작은자리온빛사랑채 주간보호센터	1차	587,167	595,815	8,648	- 입소자부담금 등 증액
6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2차	2,751,536	2,709,351	△42,185	- 수강료수입 등 감액
7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4차	303,241	289,305	△13,936	- 보조금 등 감액
8	시흥시니어클럽	5차	19,772,788	19,890,668	117,880	- 사업비 등 증액
9	시흥시가족센터	3차	9,657,703	9,164,166	△493,537	- 사업비 등 감액



(의장 신명자)

이사들의 의견을 물은 뒤, 이정근 이사의 동의와 정원오 이사의 재청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는다.

(참석이사 8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의안 제8호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 의안 제9호 : 법인 및 산하기관 7개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의장 신명자)

의안 제9호인 법인 외 7개 시설에서 제출한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최정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한다.

(이사 최정은)

법인 사무국에서 작성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1) 법인 외 7개 시설의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중점 사업 중심으로 설명하다.
- 2) 법인 사무국의 2024년도 예산총액은 23,400천원 감액된 470,000천원으로 전년도이월금 감액으로 예산 감액을 설명하다. 법인 수익사업부의 2024년도 예산총액은 26,600천원 감액된 181,600천원으로 전년도이월금 감액으로 사업수입 감액을 설명하다.
- 3) 법인 소속 7개 시설의 2024년도 예산총액은 1,332,714원 증액된 35,893,399천원으로, 직원 호봉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설명하다.

(단위: 천원)

구분	이름	예산(세입=세출)		증감액	사유
		2023년	2024년		
1	복음자리 사무국	493,400	470,000	△23,400	-후원금 감소
2	복음자리 수익사업부	208,200	181,600	△26,600	-이월금 감소
3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1,674,328	1,552,966	△121,362	-후원금 감소
4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237,052	258,340	21,288	-보조금 증가
5	작은자리은빛사랑채	595,815	615,863	20,048	-장기요양급여수입 증가
6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2,709,351	2,555,616	△153,735	-노동부사업 보조금 감소
7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289,305	327,902	38,597	-보조금 증가
8	시흥시니어클럽	19,890,668	19,392,630	△498,038	-노인사회활동지원수입 감소
9	시흥시가족센터	9,164,166	11,190,082	2,025,916	-아이돌봄사업 보조금 증가

(의장 신명자)

이사들의 의견을 물은 뒤, 이순남 이사의 동의와 조진배 이사의 재청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는다.

(참석이사 8명 전원 찬성)

(의장 신명자)

의안 제9호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 폐회선언


(의장 신명자)






상정 안건의 의결내용을 확인 후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 결의를 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낭독하고, 의장은 각 임원과 함께 기명날인하다.

2023. 12. 12.

사회복지법인 북음자리 

대표이사 신명자 

이 사 신명호   
이 사 이정근   
이 사 최종덕   
이 사 이순남   
감 사 황규남 

이 사 조진배   
이 사 정원오   
이 사 최정은   
감 사 황경상 